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 정리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우리의 목표는 당신의 합격입니다"
ustudy!

3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통합법)

- ①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② 투자자보호 강화
- ③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법의 규제 패러다임

①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증권법의 범위를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기 좋은 환경 구축

②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등 기능별로 구분

③ 업무범위의 확대

㉠ 6개의 금융투자회사의 겸업화·대형화 촉진

㉡ '이해 상충방지체계' 입법을 통한 투자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방지

④ 투자자보호의 강화

: 설명의무 신설,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 외에도 이해 상충 방지체계 마련

◆ 금융투자상품

①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② 증권 : 투자성이 있되 손실 가능성이 원본 이내

③ 파생상품 : 투자성이 있되 손실 가능성이 원본 초과

◆ 증권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 전통적인 증권

①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외 채무표시

②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

③ 수익증권 : 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에 의한 수익증권

④ 투자자보호의 강화 :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국외예탁증권 포함

◆ 포괄주의에 따라 추가된 증권

① 투자계약증권

: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②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금융위원회 (FSC)

①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당연직(4), 추천위원(3), 총 9명으로 구성)

③ 증권의 발행·관리, 공정거래 질서유지, 상장법인관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 수행

◆ 증권선물위원회

① 총 5인으로 구성(1인은 상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 위원은 대통령 임명

②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시 소집(위원장은 단독소집 가능),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 수행

◆ 금융감독원 (FSS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통합 (1999)

②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조직이나 감사권 보유, 일반적으로 공적규제기관 분류

③ 원장(1),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 감사 (1인) 원장은 대통령 임명

④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 수행

◆ 한국금융투자협회

- ① 회원 간의 업무질서 및 공정거래 확립, 투자자보호를 위한 회원조직으로 설립된 법인
- ② **회원** : 금융투자업자 외 금융투자업과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③ 회원 간 영업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전문인력 관리업무 등 수행

④ 협회에 대한 감독

- ㉠ 금융위원회 : 정관변경승인, 규정·협정 등의 제정·개정 신고, 업무정지·일임 해임권 등
- ㉡ 금융감독원 : 검사

◆ 한국거래소

- ① 증권과 파생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조직적·계속적 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율규제기관
- ② 주식회사 형태 조직, 우리나라에는 1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을 수 있음 (지점 가능)
- ③ **감독** : 증권상장·폐지승인권, 금융위의 긴급사태처분권 등
- ④ **업무** : 시장운영, 매매·공시 등의 업무, 이상 거래의 심리와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 수행

◆ 증권금융회사

- ① 증권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 수행
- ② 현재 1개사만 허용 - 한국증권금융(주)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거래에 따른 권리의전을 장부기재방식으로 처리하고, 예탁증권의 제반관리를 집중관리

◆ 명의변경대행회사

: 증권발행회사와 명의변경대행회사 사의의 계약으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관리와 증권 관리업무의 대행, 배당·이자 및 상환원금의 지급대행과 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 금융투자업

① 투자매매업(Dealing)

: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상품, 증권, 청약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업

② 투자중개업(Arranging Deals)

: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증권, 청약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업

③ 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며 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금융업

④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

⑤ 신탁업 : 신탁을 수행하는 업

◆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① **진입요건**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순서

② **진입규제 위반 시 제재** :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과함

◆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인가 업무단위 구분기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구성요소로 하는 금융기능

② 인가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함

㉡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위별 5억원 이상)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인적설비와 물적 설비를 충족하여야 함

㉤ 임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됨

㉥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③ 인가절차

: 인가신청서의 제출 -> 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 조건부인가 및 인가의 공고

④ 인가요건의 유지

- ㉠ 자기자본의 경우, 인가 시 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수준 유지하도록 완화
- ㉡ 1년에 1회 평가 후 미달하더라도 1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

◆ 금융투자업의 등록

- ㉠ 인가제보다는 완화된 진입규제이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이 해당
- ㉡ 등록 요건 : 인가요건 중 적합성 기준만 제외하고 같게 적용
- ㉢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금융투자업의 지배구조

① 대주주에 대한 규제

- ㉠ 대주주변경의 승인 : 금융위원회의 승인
- ㉡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②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 ㉠ 사외이사 : 3인 이상 두어야 함,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

: 1인 이상의 상근감사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감사위원회 설치), 3인 이상의 이사 구성

③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1인 이상 구성,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결의회를 거쳐야 함
- ㉡ 적극적 요건 :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경력 요구
- ㉢ 소극적 요건 : 금융감독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퇴임·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극적 요건이 되면 해당 직을 상실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책임자를 두어야 함
- ㉤ 소수주주권 : 지배주주 또는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

◆ 금융투자업 건전경영의 유지

① 경영 건전성 감독

-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을 뺀 금액을 기재하여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함

②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 대주주 발행증권의 소유금지
- ㉡ 계열회사 발행주식·채권약속어음의 소유제한
- ㉢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 신용제공의 제한

◆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규칙

① 신의성실의무

- ㉠ 신의성실원칙과 이해 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 ㉡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

② 투자권유

- ㉠ 투자권유 규제의 필요성
-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
-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의 확충

③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등

- ㉠ 선행매매, 스캘핑 금지 등
-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사전적, 사후적 어떤 경우든 손실보전 행위 금지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허용
- ㉣ 업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유지 (3년 ~ 10년) 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칙

① 매매 관련 규제

- ㉠ 매매형태의 명시 의무 : 투자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사전에 밝혀야 함
- ㉡ 자기계약의 금지 : 동일 매매에서 자신이 본인이며, 상대방의 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 됨
- ㉢ 시장매매의무 : 반드시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함
- ㉣ 자기주식취득인 예외 : 증권시장이 매매수량단위 이하를 장외에서 매수할 때, 3개월 내 처분
- ㉤ 임의매매의 금지 :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매매할 수 없음

- 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㉕ 선행매매(Front-Running)의 금지
- ㉖ 스캘핑(Scalping)의 금지
- ㉗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유형의 성과보수 지급금지
- ㉘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 ㉙ 투자권유 관련 규제
- ㉚ 일일매매의 금지
- ㉛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③ 신용제공

- ㉜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
- ㉝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는 신용제공을 금지

④ **매매명세의 통지** : 위법행위 방지 및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매매거래의 명세를 통지하도록 함

⑤ 투자자에탁금의 별도예치

- ㉞ 투자자에탁금은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누구든지 상계·압류를 할 수 없음
- ㉟ 예치기관은 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등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운용

⑥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거래에 따른 보관하게 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함

⑦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관한 특례**

⑧ 장외거래 규제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②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상 제한
- ④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 ⑤ 금전차입 등의 제한 : 금여대여 제한,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 등
- ⑥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자기발행증권의 취득제한 등
- ⑦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⑧ 성과보수의 제한
- ⑨ 의결권 등
- ⑩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수시공시사항,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⑪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⑫ 부동산의 운용 특례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칙

- 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 ㉝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㉞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

②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 일임 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 ㉜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
- ㉝ 투자일임 보고서를, 작성기관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교부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특례

㉜ 역외투자자문업자 : 외국투자자문업자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

㉝ 3, 6, 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㉞ 국내투자자보호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함

④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㉜ 유사투자자문업 : 불특정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발행 및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매 및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및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작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 투자상품에 관한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

㉝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2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㉞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금지됨

◆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 신탁 :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인관계를 근거로 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 신탁법상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던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하거나 권리 취득 못 함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선행매매금지, 충실의무위반행위의 금지 등

② 여유자금의 운용

㉣ 신탁계약 관련규제 : 수익증권, 의결권, 의결권행사의 금지 등

㉤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합병과 청산

◆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의 의의

① 증권발행의 방법과 최근의 변화

: 공모와 사모,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최근 인터넷을 통한 직접공모 가능해짐

② 공모와 사모

㉠ 공모 : 증권을 일반인에게 분산 취득시키기 위한 행위, 청약대상이 50인 이상

㉡ 사모 :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 청약대상이 50인 미만

㉢ 신규로 증권을 분산 취득하면 '모집', 이미 발행된 증권이면 '매출'

㉣ 50인의 산정 : 청약권유대상자 수 = 청약권유를 받은 자 + 합산대상 - 제외대상

③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미만이어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에 해당

◆ 기업공시

①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상법상의 공시 : 오로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직접 공시

㉡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 공시의 상대방을 투자자로 하는 것

② 발행시장 공시제도

㉠ 발행시장의 의의와 공시규제 필요성 : 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경솔한 투자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

㉡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특징 : '유가증권신고서'가 '증권신고서'로 명칭 변경

㉢ 증권신고서 : 발행기업과 증권에 대한 진실성 확보를 통해 증권발행사기 예방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증권 구매 시 투자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기간

㉤ 일괄신고서 : 발해인이 일정 기간 동안의 모집·매출예정물량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

㉥ 투자설명서 : 증권의 모집·매출함에서 청약의 권유 등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보장장치 : 금융위원회의 조치, 형사처분, 민사배상책임 등의 책임

③ 유통시장 공시제도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수시공시 : 기업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신속성·최신성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

㉢ 전자공시시스템의 이용 : 금융위원회는 Dart 시스템, 거래소는 Kind 시스템 사용

◆ 기업인수합병(M&A)제도

① 공개매수제도 (Take-over Bid : Tender Offer)

㉠ 공개매수

: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상정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을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

㉡ 적용대상

: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 등을 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 교환, 입찰 및 그 밖의 유상 취득하여, 본인과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공개매수의 절차

: 공개매수 공고 및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금융위원회) -> 공개매수신고서 사본의 송부·제출 ->

공개매수신고서 작성·비치, 공개매수 개시 -> 청약접수(공개매수 개시 후 20일 이상) -> 비례배분배정(초과청약 시) -> 공개매수통지서 송부(응모자) -> 공개매수결과보고서제출 (금융위)

㉔ 공개매수 조건·방법

: 공개매수기간(20일~60일 이내), 공개매수기간 별도매수금지, 전부 매수의무, 공개매수가격(균일가), 응모주주의 취소권보장(공개매수기간 중)

㉕ 공개매수신고서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함

㉖ 공개매수설명서 작성 강제

: 공개매수설명서는 공개매수신고서 기재사항과 같아야 하고,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을 매도하는 자에게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함,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㉗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공개매수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분 등

②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5% Rule)**

㉙ 주식 등의 5% 이상 보유 사실과 그 후 지분변동을 즉시 공시시켜 증권거래의 투명성 확보

㉚ 주요내용 :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5% 이상)보유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및 보유목적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㉛ 보고기준일 :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변경

㉜ 냉각기간

: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5% 이상 보유를 신고했을 때는 보고일로부터 5일간의 냉각기간 적용

③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㉝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다수결 원칙을 따르나, 주주는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사표가 대량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소액주주의 이해·의사에 반하여 경영자가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특정인이 집단으로 의결권을 수집·행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㉞ 최근에는 경영의 획득수단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중요성 부각

◆ **불공정거래 행위규제**

① **투자자보호 강화**

㉟ 일원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증권· 선물 등 개별 적에서 일원화로 규제체계가 변경

㊱ 투자자보호의 공백 제고 : 포괄주의 규제체제 도입

㊲ 투자자 보호수준의 강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제 수준을 강화하여 억제력 강화

②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인식 및 규제**

③ **불필요·부적절한 규제의 철폐**

◆ **불공정거래 유형과 규제**

① **유형**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일반서지적 부정행위

②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규제**

㉟ 내부자거래 : 내부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㊱ 내부정보 :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개되기 전의 것

㊲ 미공개정보 :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전의 것 (내부정보)

③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㉟ 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이익은 그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㊱ 매도·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예외 적용 가능

㊲ 형사책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

④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제도**

: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⑤ **공매도 규제**

㉟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공매도 하거나 그 위탁 및 수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함

㊱ 공매도 적용대상 증권 :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주식 관련 사채권

⑥ **시세조종행위 규제**

: 위장거래,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법,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규제 등

⑦ **사기적 행위 금지**

-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공개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적용하며 누구든지 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음

⑧ **역외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

⑨ **기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보완**

: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금지규정 폐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주식거래가 허용되는 조건**

- ①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②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③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할 것
④ 그 밖의 불공정행위의 및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의 방지를 위해 기준절차와 방법을 준수할 것

2장 금융위원회의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개념**

: 금융위가 입법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이나 금융 관련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형식으로 정한 것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격**

- ① 합의체 행정기관인 금융위에 의하여 제정된 전형적인 법규명령의 일종
② 자본시장법 체계

: ‘법률 - 법시행령 - 법시행규칙’의 3단계 외에 금융위원회 규정과 금감원 규칙 등 5단계로 구성

◆ **증권의 발행신고**

- ① **청약의 권유와 제외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호)

㉠ **청약의 권유**

: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려고 광고, 안내문 및 홍보전단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및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 ㉡ **제외기준** (단순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보는 경우)

: 인수인의 명칭 표기,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 ①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기재사항의 특례**

㉠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사채권의 발행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

㉢ 만기 시 최저지급액을 발행가액 이상으로 정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7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

㉣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 간 합병 등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②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 대표이사와 담당이사의 서명,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

㉡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 기존법인은 감사보고서 혹은 분기검토보고서 등, 주권비상장법인은 주주명부, 설립 중인 법인은 사업계획서,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등, 보증 사채권을 모집할 시에는 원리지급보증계약서 사본 등,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시에는 체결된 투자계약관계서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첨부

③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

: 지분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기 전 신고서를 제출할 시 모집·매출가액, 청약증거금, 인수증권 수, 인수조건, 인수인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

① 시행령상의 정정사항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 ㉠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 ㉡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부기일
- ㉢ 자금의 사용 목적
- ㉣ 인수인·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② 금융위원회 고시의 정정사항

- ㉠ 증권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 ㉡ 발행증권의 수
- ㉢ 모집 또는 매출 되는 증권에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 파생결합증권은 모집 또는 매출 되는 증권에 대한 구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발행실적보고서

① 발행실적보고서의 기재사항

- ㉠ 발행인과 주관회사의 명칭 (발행인의 주소)
- ㉡ 청약, 배정, 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증권에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사항
-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용
- ㉥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용
-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용

② 합병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 기재사항

- ㉠ 합병 등의 일정
-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 ㉤ 합병 등 관련 소송의 현황
- ㉥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 합병 등 전·후의 요약 재무정보

◆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에 모집·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 전부터 그 청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증권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안정조작을 할 수 없음

◆ 기업의 인수

- ① 기업의 인수방식 : 주식매수, 합병, 영업양수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
- ② 주식매수는 장내·장외매수로 구분되며, 장외매수는 공개·직접 장외매수로 구분

◆ 공개매수신고

① 공개매수의 요건

- ㉠ 해당 주식 등의 매수를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② 공개매수면제 요건

- ㉠ 시행령상 공개매수면제 요건
- ㉡ 금융위원회 공시 상 공개매수면제의 요건

◆ 의결권대리행사의 경우

- ① 상장주권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피권유자에게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해야 함
- ② 참고서류 기재사항

: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개요,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 및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기재하되 항목별로는 적절한 표제를 붙여야 함

◆ 상장법인 공시

① 사업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 등

②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 사업의 내용 (제조·서비스업과 금융업으로 구분)
-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등 특정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② 중요한 자산양수·양도의 예외

-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 금융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공개매수 청약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 공시서류 제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채택)

- ① 외국 법인 등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류 등은 한글로 작성해야 함
- ② 발행인은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의 금융투자감독기관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 및 한글 요약본 2부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함
- ③ 발행인이 제출하는 공시서류는 이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함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① 자기주식의 취득기간

: 주권상장법인은 취득결과보고서를 때에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이사결의회를 할 수 있음

②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방법

-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
- : 장 개시 전 주문은 전일의 종가보다 5/100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

㉡ 거래소가 정하는 시장의 시간 중 주문

: 주문시점 최우선 매수호가와 주문 직전 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 중 높은 가격,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주문 직전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③ 주문수량

: 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 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이사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하루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함

④ 위탁투자중개업자의 수와 사전공시

: 매도주문 위탁 시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함

⑤ 자기주식 취득결과의 보고

: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함

⑥ 자기주식 처분기간

: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신고 주식 수 또는 처분예정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월이 지나야 새로운 이사회를 결의할 수 있음

⑦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의 산정기준

- ㉠ 이익소각 목적 이외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 (이익배당 한도금액 + 직전년도 말 이후 처분한 자기주식 취득원가) - 자사주취득금액 -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금액 - 이익배당금액과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

- ㉡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 이익배당을 할 수있는 금액 - 재평가적립금 - 기업발전적립금 -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

◆ 합병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 ①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3/100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3/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② 외부평가기관에 자본금의 5/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자본금의 5/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 ③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④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⑤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의 경우
- ⑥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 : 1년이 지난 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
-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한**
 - ㉠ 소수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 청구 시부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논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 ③ **전환가액 결정** (아래 사항 중 높은 가격 이상)
 - ㉠ '1개월, 1주일, 최근 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④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특별제한**
 -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의 1/3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함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 ① **법 시행령에 정하는 인가대상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② **금융위원회고시에 정하는 인가대상 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편관서 등

◆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 ① **인력에 관한 요건**
 - ㉠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 ㉡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등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금융회사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해당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
 - ㉥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영위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 ㉦ 인가업무별 단위별로 증권전문인력, 부동산전문인력 등 투자운용전문인력을 1~5명을 갖추 것
- ② **물적 설비**
 - ㉠ 전산설비, 보안설비 및 통신수단
 - ㉡ 업무공간과 사무 장비
 - ㉢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 구축
- ③ **사업계획**
 - ㉠ 수지전망

- ㉔ 경영 건전성 기준
- ㉕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 ㉖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㉗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양성계획

④ 이해 상충방지체계

- ㉙ 이해 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㉚ 정보교류 차단

⑤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 ㉛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 ㉜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⑥ 대주주의 요건

- ㉝ 금융투자업인가 시

: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非 금융기관인 경우에 따라 요건이 다름

- ㉞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 요건

: 금융기관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와 내국법인인 경우에 따라 요건이 다름

- ㉟ 외국인 업무 등록요건

: 최근 결산기 말 자기자본이 30억원을 초과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⑦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임직원들이 직무상 준수할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 선임, 정기교육, 분쟁해결절차 등

◆ 건전경영유지

① 회계처리 기준

- ㉟ 재무제표 표준양식과 외국인 계정의 경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함
- ㊱ 신탁부문은 고유부문과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② 재무건전성

- ㉡ 영업용 순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에 수반되는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유지

- ㊲ 영업 순자본 = 순재산액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 영업순자본비율 = $\frac{\text{영업용 순자본}}{\text{총위험액}} \times 100$ (높을수록 좋음)

- ㉣ 경영실태평가 :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정경영 유도

- ㉤ 외환건정성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80/100 이상

◆ 공통영업행위 규칙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일반

- ㉦ 겸영업무 :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 ㊳ 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부수 업무 영위 장소, 부수사업의 영위 방법을 7일 이내에 공고해야 만 부수 업무를 할 수 있음

② 투자권유

- ㉧ 등록신청서 서류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자격기재, 경력증명서 첨부 등

- ㊴ 등록증 교부 : 등록번호, 회사명칭, 등록 일자,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등

③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 ㉨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 운영,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받을 것

- ㊵ 경영실태평가와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 ㉩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 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 ㉪ 협회의 투자광고문에 협회심사필·준법감시인 심사 필을 표시할 것 등

④ 기록보관 및 유지

: 장부 외 거래기록은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⑤ 소유증권의 위탁

◆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금전, 물품 등을 받거나 하는 경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목적, 내용, 일자 및 상대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함

②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타 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수료 및 매매가격 등을 정하거나 손실 및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③ 신용제공

: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징수, 담보비율은 신용제공금액의 140/100 이상 상당의 담보징수

④ 투자자에탁자산관리

㉠ 위탁자에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에수금

㉢ 조건부예수금이며 각 예수금 10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②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및 이익수령,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제한, 성과보수의 제한

③ 보고 및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 및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④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⑤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의 운용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특정금전신탁 자금운용기준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신탁재산 상호 간·단순거래목적 거래, 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장외거래

① 비상장 주권의 장외거래

㉠ 장외시장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이외의 시장

㉡ 비상장주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

㉢ 호가중개대상주식회사의 신고

② 채권의 장외매매

㉠ 결제방법 :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채권의 공매도 : 증권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 당해 가격, 직전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못 함

㉢ 장외거래정보의 공시

: 채권의 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해야 하며,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매매, 중개거래내용 등을 관리 및 공시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

: 시장성이 있고, 투자자격 판정을 받아야 함

④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취급방법 제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무담보매매·중개방식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최근 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

⑤ 국외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외화증권의 결제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대금 충당 가능

㉡ 외화증권의 결제일

: 매매주문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지난 날

⑥ 단주의 장외거래

: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거래

⑦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할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⑧ 공공적 법인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의 확인

: 외국인·외국 법인 등은 누구의 명의로 하던 종목별 1인 취득 한도, 종목별 전체 취득 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②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옵션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존의 취득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

① 등록

㉠ 등록요건 : 자본금·출자금 1억원 이상

㉡ 등록사항이 변경된 후 2주내에 금융위에 변경등록

② 집합투자계약의 기재사항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취득자산 초과 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③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④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부실 우려 단계 - 발생단계 - 개선단계 - 악화단계

⑤ 사모 전문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사원의 총 수는 50인 미만

㉡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100 이상을 경영권 지배를 위한 방법으로 운영

㉢ 경영권 지배를 위한 투자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분증권 보유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표준약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

㉡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① 증권금융회사

㉠ 자기자본의 범위 :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 위험관리 : 신용·운영·시장·금리·유동성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건전성평가 :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 평가

② 종합금융회사

㉠ 적격업체의 선정 : 신용조사,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 후 적정할인 한도 설정

㉡ 무담보어음의 취급

: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증권 투자 한도

㉣ 자기자본의 범위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증권 투자 한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도환매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

㉥ 경영 건전성기준

: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100 이상,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 100/100 이상

㉦ 위험관리체제

: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측정 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함

◆ 기타

①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편관서, 창업투자회사 등

② 사모투자집합기구의 투자자 산정 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과 군인공제회·건설공제조합·정보통신조합은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49인을 산정할 때 제외

③ 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 제출

: 법인·단체는 금융투자상품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

④ 금융위 보고

: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 등에 보고

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①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할 수 있음

② 금융투자회사는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함

◆ 개별약관

: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과 관계 서류를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함

◆ 보고 특례 (사후보고)

: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함

① 약관내용 중 고객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협회가 제정한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 협회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수락한 금융투자회사는 5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을 제출하고, 협회는 심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회의 분쟁조정담당 집행임원이 위원장

②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결의에서 배제되며,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기피신청 가능

◆ 위원회에 부처지기 전 처리되는 경우

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② 법원 또는 다른 기관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③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④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등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① **위원회 회부** :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② **조사** :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자료 수집

③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출석진술 요청 등

④ **결정** :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및 결정

⑤ **조정결정 통지**

⑥ **조정의 성립** : 조정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

⑦ **재조정 성립** : 허위나 새로운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 가능

◆ 자율규제위원회

① 위원회 구성

㉠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1인 (상근, 임기 3년)

㉡ 자율규제위원 6인 (비상근, 임기 2년)

: 금융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재무전문가 1인, 정회원의 대표이사 1인

② 회의의 소집

㉠ 3인 이상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소집할 때, 일시·장소·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

③ 위원회 결의사항

㉠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나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에 대한 조사·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러 사항

④ 위원회의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⑤ 위원의 배제, 기피 및 회피

㉠ 배제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 배우자/4촌 이내 가족 등 인척관계,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

㉡ 기피

: 위원에게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 가능, 위원장 직권 결정

㉢ 회피

: ㉠, ㉡ 의 사유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⑥ 제재의 종류

㉠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 할 수 있는 제재

: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회원자격의 정지, 경고, 주의, 제재금의 부과 등

㉡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권고 할 수 있는 제재

: 해임,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경고, 주의

㉢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 주식의 인수

① 주식공모가격의 결정

㉠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정함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 및 해당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킬 수 없음

② 주식공모시 주관회사에 대한 제한 요건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 주식 등을 5/100 이상 보유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100 이상 보유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주식 등을 10/100 이상 보유

㉣ 주관회사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100 이상 보유 등

③ 청약 및 배정

㉠ 기업공개 시 주식 배정

㉡ 기업공개 시 주색배정 제한

㉢ 초과배정옵션

◆ 무보증사채 등의 인수

① 무보증사채의 인수조건 :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함

②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사의 주식 등을 5/100 이상 보유

㉡ 주관사와 주관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사의 주식 등을 10/100 이상 보유

㉢ 주관사의 임원이 발행사의 주식 등을 1/100 이상 보유

㉣ 주관사 또는 발행사의 임원이 발행사 또는 주관사의 이해관계인 경우 등

◆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 ①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함
- ②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부터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해서는 안 됨

◆ 투자권유

- 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적합한 주요직무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투자권유대행인만이 투자권유 가능
- ② 적합성 확보
: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로 확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 및 보관(10년 이상)
- ③ 파생상품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 ㉠ 주권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전문투자자로 간주하지만,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 시, 투자목적·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함
 - ㉢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
 -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

④ 설명의무

- : 협회의 기본양식을 토대로 회사별로 수정하여 설명서를 작성·사용해야 함
- ㉠ 설명서 교부 상품종류 : 장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유사국외통화선물거래, 장외파생상품, 외화증권, 주식 워런트, 신용거래
- ㉡ 핵심설명서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의 어려움이 있어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
- ㉢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에 대한 특례
: 만기 전에 해당 손실요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⑤ 위험고지

- ㉠ 일종매매거래(Day Trading)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일종매매거래의 위험을 고지 해야 함
- ㉡ 시스템매매
: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음과 올바른 이해없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⑥ 펀드판매의 금지행위

- ㉠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수수료가 높다 하여 특정 펀드판매에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
- ㉡ 펀드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펀드판매의 대가로 다른 투자자보다 부당하게 높은 매매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 예상수익률의 보장, 확정적 단언 및 암시의 표현, 실적배당상품 본질에 반하는 설명 행위 등

◆ 투자권유 준칙

- ①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주요내용
: '적합성의 원칙 - 설명의무 - 파생상품투자자보호 강화' 등
- ② 고객성향 분류
 - ㉠ 고객의 투자경험, 소득 및 재산상황 등 항목별로 일정 점수를 배정
 -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점수에 따라 고객 분류
 - ㉢ 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정책에 따라 더 세분화 및 단순화 가능
- ③ 투자권유
 - ㉠ 고객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등 고객의 투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은 권유 불가
 - ㉡ 고객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④ 설명의무
 - ㉠ 설명 전,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
 - ㉡ 고객이 서명·기명날인하여 설명서·투자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아도 됨
 - ㉢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고객은 이해가 안 될 경

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로 전환될 수 없는 전문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투자회사,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전문투자자

: 주권상장법인,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등

㉢ 일반투자자에서 전환된 전문투자자

: 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협회에서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 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일반투자자로 협회에서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개인 등

⑥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범위 안에서만 투자권유 가능 (협회의 보수교육을 이수)

㉡ 회사 및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① **조사분석자료 작성원칙 등**

: 금융투자분석사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확인 없는 공표 및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됨

② **조사분석 대상 법인의 제한**

㉠ 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 워런트 증권

㉢ 회사가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 인수·합병 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 등

③ **조사분석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 회사가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는 법인

㉡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회사가 인수·합병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하인 법인 등

④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 기업의 IPO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초 거래일로부터 1년간 2회 이상의 조사분석자료를 무료로 공표해야 하며, 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지

⑤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 1년 3회 이상 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해야 하며, 더는 자료를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중단사실을 알려야 함

⑥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 선물, 옵션 등을 매매해서는 안 됨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7일 동안은 공표한 투자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시행해야 함

◆ **투자광고**

① **광고시 위험고지 표시방법**

: 위험고지 사항은 활자 색상 및 노출시간 등을 통해 눈에 잘 띄게 해야 함

②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등

③ **홈쇼핑 광고시 준수사항**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금융투자상품·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④ 펀드 운용실적 표시

㉠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기준일 현재 총 운용규모가 200억 작 이상일 것

㉡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누적수익률을 사용하고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⑤ MMF에 관한 특례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실현수익률을 표시할 것

㉡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MMF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말 것

⑥ 투자광고의 심의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협회에 심사 청구(단순 이미지 광고 및 지점 광고 등은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 광고 가능)

㉡ 소속 투자광고에 표시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15% 이상 변동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또는 순위가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용 할 수 없음

⑦ 운용실적 비교광고

㉠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 동일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 할 것

㉢ 운용실적 비교대상기간을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연단위로 2기간 이상으로 표시할 것 등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①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않는 범위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및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경품류 또는 식사

㉢ 애·경사 등과 관련한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및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료

②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1회당 최대 20만원

㉡ 연간 100만원

③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 구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등

◆ 신용공여

① 협회가 정하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증권

㉠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한국거래소가 매매 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②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 상장주권 또는 ETF,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당일종가

㉡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 결합증권

: 2이상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 집합투자증권 (ETF 제외)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 직원의 복무원칙

: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직원의 금지행위

①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상품의 거래·일임 등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제3자의 명의·주소를 사용토록 함

③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임 등의 체결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주소 등을

사용토록 함

- ④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일임 체결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의 대차를 하거나 소속 금융투자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아니한 제3자와의 금전의 대차 등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는 행위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제도

- ① 필수 :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 ② 자율 :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합격자만 응시가능)

4장 회사법

◆ 주식회사

: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① 주식회사법의 특징

- ㉠ 강행법규 : 다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 구성
- ㉡ 공시주의 : 회사의 재산상태와 주요사항을 공시하여 주주·채권자를 보호
- ㉢ 단체주의 : 다수 출자자가 존재,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가 요청 됨
- ㉣ 민사·형사 제재 : 상법상 벌칙규정과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② 자본

- ㉠ 자본제도 : 총액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 (우리나라 : 수권자본제도)
- ㉡ 자본의 기능 : 회사설립의 물적 기초, 회사재산 보유 기준,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 기능
- ㉢ 자본의 3원칙 : 자본확정, 자본유지, 자본불변

③ 주식

: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각 주식의 금액 균일해야 함

④ 유한책임

-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
-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요소,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 못 함
- ㉢ 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을 가중 못함, 주주에 대한 납입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감경 못함
- ㉣ 주주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회사채무를 부담하거나 추가지출을 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설립 :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

발기인구성-정관작성및공증-주식발행사항의결정-주식총수의인수-출자의이행-이사,감사의선임-이사,감사의조사보고-설립등기

② 모집설립 : 주식의 총수 중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발기인의구성-정관의작성및공증-주식발행사항의결정-주식의일부인수-주주모집및주식배정-출자의이행-검사인의변태설립사항조사-창립총회-설립등기

③ 발기인의 구성

: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한 자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법인 및 무능력자도 가능, 상법상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음

④ 정관작성 및 공증

- ㉠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활동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하는 근본규칙
- ㉡ 발기인이 작성하며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 ㉣ 정관은 대내적으로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주주와 기관을 구속

⑤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정관에 기재 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⑥ 출자의 이행 (법 제295조)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 납입

⑦ 이사, 감사의 선임 (법 제296조)

: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하며, 모집설립의 경우,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

⑧ 설립경과의 조사 (법 제298조)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보고

⑨ **설립등기 (법 제317조)**

㉠ 발기설립 :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 등기

㉡ 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 등기

⑩ **설립무효소송제도 (상법 제328조)**

: 주식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무효소송제도가 인정 됨

◆ **주식, 주주, 주권**

① **주식**

㉠ 주식의 종류 :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기명주식·무기명주식,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의결권주·무의결권주, 상환주식·전환주식

㉡ 주식의 양도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법률 및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식양도를 제한하지 못함 등

② **주주**

㉠ 주식회사의 구성원, 주식의 귀속자, 자격 제한 없음,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

㉡ 주주의 권리

: 자익권 (이익배당권, 신수 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공익권 (경영참여 목적)

㉢ 주주의 책임

: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함, 한도를 가중시킬 수 없음

㉣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고 기재한 장부, 회사에 대한 추정력, 면책력, 대항력 등이 있음 등등

㉤ 소수주주권 : 주주권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단독주주권 :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③ **주권**

㉠ 주권의 의의 : 사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 주권 발행의 시기 :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해야 함, 그 기간이 아니면 발행하지 못함, 규정을 위반한 주권은 무효

㉢ 주권불소지제도 :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그 신고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

④ **주식양도**

㉠ 법률상의 제한, 권리주의 양도제한, 주권발행 전의 양도제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상호주식의 취득금지

㉡ 정관에 의한 제한 :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식양도승인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주식의 양도방법 : 주권의 교부

⑤ **주식의 담보**

㉠ 주식은 양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유가증권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기명주식의 입질 : 약식질, 등록질

㉢ 양도담보 : 실제로는 주식의 입질보다 양도담보가 더 많이 이용됨

◆ **주식회사의 기관**

① **주주총회**

㉠ 회사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식기관의 필수적 기관이며 전속적 권한을 가진 최고 상설기관

㉡ 소집권자 : 이사회 결의,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집

㉢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 연 2회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 소집, 임시총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 가능

㉣ 소집지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

㉤ 의결권 : 1주당 1개,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음 등

㉥ 주주제안권 :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 1이상의 수로써 함

② **이사**

- ㉠ 구성원으로 기관은 아니며,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
- ㉡ 3인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함
-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
- ㉣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회사는 이사가 될 수 없고, 감사를 겸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이어야 함
- ㉤ 의무 : 선관주의의무, 직무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의 제한 등

③ 대표이사법

- ㉠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상설기관
- ㉡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음
- ㉢ 대표이사 선임 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④ 사외이사법

- ㉠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 선출, 감시 등의 업무 수행

⑤ 이사회

- ㉠ 이사전원으로 구성된 법정 합의체 기관, 필수상설기관
- ㉡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직무집행감독 등
-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음

⑥ 감사

- ㉠ 회계 및 업무의 감사, 필수상설기관
- ㉡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 취임 3년 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
- ㉢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은 감사가 될 수 없음
- ㉣ 회계 및 직무집행감사권,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서명권 등의 권한
- ㉤ 선관주의, 감사록의 작성, 이사회에 대한 보고,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등의 의무
- ㉥ 감사가 중대한 과실 및 악의 등으로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⑦ 감사위원회

-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3인이상 이사로 구성
- ㉡ 감사위원의 해임에는 이사전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① 신주발행

- ㉠ 보통의 신주발행 :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
- ㉡ 특수한 신주발행 :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신주 발행
- ㉢ 신주인수권
 - : 회사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 신주발행절차
 - : 신주발행의 결정 - 주주의 모집 - 주식인수의 청약 - 제3자의 신주인수권 - 신주배정일의 지정

② 사채의 모집

- ㉠ 회사가 다액의 금액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
- ㉡ 사채발행의 제한 : 총액의 제한, 사채모집의 제한, 사채금액의 제한,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 ㉢ 사채계약의 성립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되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도 발행 가능 등
- ㉣ 납입 : 주식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으므로 납입은 상계·대물변제로도 가능
- ㉤ 특수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 자본의 감소법

① 자본감소

- ㉠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감소, 감소시 등기 해야 함
- ㉡ 정관의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주금액의 감소시 정관의 변경 필요
- ㉢ 감소된 자본도 5,000만원 미만으로는 할 수 없음

② 자본감소 방법

- ㉠ 주금액의 감소방법 : 환급 및 소감(절기)
- ㉡ 주식수의 감소방법 : 주식의 소각과 주식의 병합

- ㉔ 자본감소의 절차 : 통지 및 발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㉕ 채권보호절차
- ㉖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시기 : 1주의 액면금액 감소, 병합, 강제소각, 임의소각

◆ 회사의 계산법

① 재무제표

- ㉑ 제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㉒ 감사보고서 작성 :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이사회에 제출
- ㉓ 비치·공시 :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위 서류를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
- ㉔ 승인·보고 :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작성
- ㉕ 공고 :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

② 준비금

- ㉑ 회사의 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 두는 계산상의 금액
- ㉒ 법정준비금 :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용도(결손전보, 자본전입)
- ㉓ 임의준비금 (임의적립금) : 회사가 이익 가운데서 유보시켜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

③ 이익배당

- ㉑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㉒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 포기는 가능
- ㉓ 요건 :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 ㉔ 주식배당 :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㉕ 중간배당 : 연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에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 배당

◆ 회사의 합병

①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으로 법정절차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회사로 합치는 것

② 경제적 경쟁회피, 비용절감, 시작독점 등의 목적

③ 상법상 합병은 자유, 동종회사, 이종회사 사이에도 합병 가능

④ 합병제한

- ㉑ 회사의 일방·쌍방이 주식·유한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설립하는 회사 역시 주식·유한회사
- ㉒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이 필요
- ㉓ 해산 후의 회사 :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경우에만 합병 가능

⑤ 합병의 효과

- ㉑ 회사의 소멸 :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거치지 않음
- ㉒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회사 정관변경, 신설합병의 경우 회사 성립
- ㉓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존속·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분할

①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됨

② 기능별 분화, 적자사업 분리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 기타 다양한 목적

③ 유형

- ㉑ 단순분할 : 분할을 통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㉒ 분할합병 :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여러 개의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할 수 있음
- ㉓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음
- ㉔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음

④ 분할요건

- ㉑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회사를 신설할 경우 분할·분할합병 가능
- ㉒ 분할 부분을 양수하여 회사 신설·존립 중인 회사가 양수하여 존속하는 경우 주식회사여야 함
- ㉓ 분할의 효과 : 회사의 해산·변경·성립의 효력이 발생하며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적용범위

: 상장회사에 적용되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 제외

② 주요내용

- ㉑ 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

- 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법 제542조의4)
- ㉕ 소수주주권 (법 제542조의6)
- ㉖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법 제542조의7)
- ㉗ 사외이사의 선임 (법 제542조의8)
- 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법 제542조의9 및 제624조의2)
- ㉙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 제542조의10 및 제542조의11)
- ㉚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42조의12 신설)

5장 증권 세제

◆ 조세의 개념

- ①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②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국고의 목적)이 주목적, 각종 정책적 목적도 중요시
- ③ **과세시기** :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④ **보상여부** : 개별보상 (직접적인 반대급부)은 없고, 일반보상 (국방, 치안, 도로 등)은 있음
- ⑤ **지불수단** : 금전급부 (예외 : 물납)
- ⑥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 국세

- ① **내국세**
 - ㉔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㉕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㉖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② **관세** :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 재정관세, 보호관세

◆ 지방세

- ① **특별시·광역시세**
 - ㉔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㉕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② **도세**
 - ㉔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 ㉕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③ **시·군세 (광역시의 군세포함)**
 - ㉔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㉕ 목적세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④ **구세**
 - ㉔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 ㉕ 목적세 : 사업소세

◆ 직접세와 간접세

- ① **직접세**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정된 조세
- ② **간접세**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로 전가될 것으로 예정된 조세

◆ 독립세와 부가세

- ① **독립세** :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② **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어 과세하는 조세

◆ 조세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① **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조세
- ②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미리 정해진 조세

◆ 과세표준의 표시에 따른 분류

- ① **증가세** : 과세표준이 금액이고, 세율은 백분비(%)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
- ② **증량세** : 과세표준이 수량이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 조세 평등주의

- ① **수평적 공평** : 같은 능력에는 같은 조세부담
- ② **수직적 공평** : 더 큰 능력에는 더 큰 조세부담 (예:추과누진세율)

◆ 가산세와 가산금

- ① **가산세** : 개별세법, 국세기본법, 세법규정 불이행 시 부과, 조세에 해당, 산출세액
- ② **목적세** :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이자, 조세 아니며 고지세액

◆ 국세부과의 원칙

- ① 실질과세의 원칙 (법 제14조)
- ② 신의성실의 원칙 (법 제15조)
- ③ 근거과세의 원칙 (법 제16조)
- ④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법 제17조)

◆ 조세법률주의

-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
-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여 그 의미가 일관성을 가져야 함
- ③ **합법성의 원칙** :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
- ④ **소급과세의 금지** :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법령 및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음
- ⑤ **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 제21조)

-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②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 ③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④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 ⑤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 ⑥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⑦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국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⑧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국세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법 제28조)

- ①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② **정지사유** :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 등

◆ 수정신고, 경정청구

- ① **수정신고** : 최초 신고 시 과소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의 50% 경감
- ② **경정청구** : 최초 신고 시 과다신고를 한 경우, 3년 이내에 담당세무서장에게 청구 가능
- ③ **심사와 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이익에 침해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 소득세법

- ① 개인의 매년 또는 연간 발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 ② 소득세는 국세, 직접세, 보통세의 성격

◆ 소득세의 과세범위

- ①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소득
- ②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 소득의 구분

- ①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
- ②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일시금
- ③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의 과세방법

- ① **종합과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 ② **분류과세** : 각 소득별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 종합소득 이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
- ③ **분리과세** : 법정률만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과세

◆ 종합소득세 계산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③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 ① **확정신고** :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법 제70조)
- ② **자진납부** : 납세지 담당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편관서 (법 제76조)

◆ **종합소득세 및 세율 (법 제55조)**

- ①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 1인당 연 150만원
- ②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1인당 연 50만원
 - ㉣ 6세이하 자녀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 출생자 및 입양자 : 1인당 연 200만원
- ③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인 연 50만원, 2인초과 50 + 초과 1인당 100만원
- ④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⑤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
 - ㉡ 자진납부 : 납세지 담당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편관서 (법 제76조)

◆ **원천징수**

- ① **거주자 세율**
 -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 신청의 경우 : 30%
 - ㉡ 비영업대금이 이익 : 25%
 - ㉢ 기타의 이자/배당소득 금액 : 14%
 -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 35%
- ② **비거주자 세율**
 - ㉠ 지급받는 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 조약상의 제한 세율
 -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3%

◆ **양도소득**

- ① **재고자산 외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법에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
- ②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도, 교환,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매, 토지수용 등
- ③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상양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양도, 등
- ④ **납세의무자**
 - ㉠ 거주자 : 국내외 발생 모든 소득
 - ㉡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 : 토지, 건물
-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 ③ **주식 또는 양도로 발생** : 주권상장법인주식,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비상장 법인주식
- ④ **기타자산** :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영업권, 특정주식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③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금액 계산법 (법 제95조)**

- ① **양도차익** = 양도금액 - 필요경비
-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상속세**

- ① **피상속인의 사망 및 실종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
- ② **납세의무자**
 - ㉠ 상속, 유언에 의한 증여,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사는 곳을 둔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부과

㉔ 상속재산은 민법상의 상속재산, 유언에 의한 증여 자산, 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분여재산을 뜻하나, 상속세법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③ **납세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함

④ **상속세 부과기준일**

㉕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 (공부상/사실상 사망일이 다를 경우)

㉖ 실종선고일 (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물적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증여세

① **증여에 의해 수증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② **납세의무자**

㉕ 거주자 : 국내·국외 수증자가 납세

㉖ 비거주자 : 국내 수증자, 국외 증여자가 납세

③ **증여추정 및 의제** : 법률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나 실질적 내용이 재산의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또는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④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

㉕ 과세가액 : 증여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동일인 10년 내 1천만원 이상 수증액)-인수채무

㉖ 과세표준 : 증여과세표준 = 증여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감정평가)

㉗ **세율** : 상속세 세율과 동일

⑤ **상속·증여·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증여되는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

◆ 신고와 납부

①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는 국내거주는 6월, 국외거주는 9월이내, 증여세는 3월 이내

② **세액공제·가산세**

㉕ 신고세액공제 :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x10%

㉖ 과소신고가산세 : 기간내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과세신고세액X10% 또는 20%

㉗ 미납부가산세 : 법정기간 내에 미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10.95%

◆ 증권거래세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국세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① **주권**

㉕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

㉖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지분**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③ **양도**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④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 납세의무자 (법 제3조)

① **한국에탁결제원** :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

②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

③ **양도자** : 위의 경우 외에 주권을 양도

④ **양수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

◆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양도사유 (법 제6조, 영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③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⑥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과세표준의 원칙

: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양도가액의 과세표준으로 함

◆ 증권거래세의 세율 (법 제8조 및 영 제5조)

- ① 기본세율 : 0.5%
- ②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5%
- ③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3%

◆ 신고 및 납부 (법 제10조)

- ①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② 그 이외의 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담당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편관서에 납부